

# 내부통제기준

2023 년 3 월 10 일

마스틴투자운용 주식회사

# 목 차

##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3 조(적용범위)

제 4 조(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

## 제 2 장 준법감시인

제 5 조(자격요건)

제 6 조(임면절차)

제 7 조(임기 및 지위)

제 8 조(권한과 의무)

제 9 조(직무)

제 10 조(독립성 확보 및 겸직금지)

제 11 조(준법감시조직의 설치)

## 제 3 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 12 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제 12 조의 1(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 제 4 장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제 13 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제 14 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 제 5 장 정보의 효율적 전달체계

제 15 조(정보의 효율적 전달체계)

제 16 조(관련회사 등과의 협조)

제 17 조(사무관리의 원칙)

제 18 조(적절한 문서관리)

## 제 5 장 행동규범

제 1 절 윤리강령(Code of Ethics)

- 제 19 조(법규준수)
- 제 20 조(보고의무)
- 제 21 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 22 조(기본윤리 및 직무태도)
- 제 23 조(투자자이익 우선)

## 제 2 절 행위준칙(Code of Conducts)

- 제 24 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제 25 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제 26 조(비밀정보의 정의)
- 제 27 조(비밀정보의 관리)
- 제 28 조(비밀정보 제공절차)
- 제 29 조(차별금지 및 성희롱 방지)
- 제 30 조(정부 또는 감독기관이나 언론기관과의 접촉)
- 제 31 조(이해상충의 관리)
- 제 32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제 33 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
- 제 34 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편익제공 등)
- 제 35 조(상품개발)
- 제 36 조(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의 작성)
- 제 37 조(투자광고)
- 제 38 조(조사분석보고서)

## 제3절 정보차단벽

- 제 39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 제 40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 제 41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 제 42 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 제 43 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 제 44 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제 45 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 제 46 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 제 47 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 제 48 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제 49 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 제 50 조(계열회사 등 제 3 자와의 정보 교류)

- 제 51 조(복합점포 설치·운영)
- 제 5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 제 53 조(임직원의 겸직)
- 제 54 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 제 55 조(임직원 교육)
- 제 56 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 **제 6 장 자산관리업**

- 제 57 조(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제 58 조(수탁자산 투자·운용지침)
- 제 59 조(회사 고유재산의 거래제한)
- 제 60 조(투자회사간의 거래)

## **제 7 장 집합투자업**

- 제 61 조(매입·환매 청구의 정정)
- 제 62 조(운용과 매매의 분리)
- 제 63 조(사전자산배분 등)
- 제 64 조(거래가격의 적용)
- 제 65 조(기준가격의 산정절차의 적정성 확보)
- 제 66 조(기준가격 등 오류수정원칙)
- 제 67 조(기준가격 등 오류발생 보고)
- 제 68 조(기준가격 등 오류의 수정)
- 제 69 조(기준가격 등 오류발생 및 수정결과의 대외 통지)
- 제 70 조(오류발생 관련 자료 등의 기록 유지)
- 제 71 조(재발방지대책 수립)
- 제 72 조(중개회사 선정기준)
- 제 73 조(의결권 행사)
- 제 74 조(집합투자기구 관련 공시)

## **제 8 장 자금세탁 방지**

- 제 75 조(자금세탁 방지)

## **제 9 장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보호**

- 제 76 조(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 제 77 조(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제 78 조(내부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제 79 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 제 10 장 금융사고 예방

제 80 조(금융사고 예방)

제 81 조(명령휴가제도)

제 82 조(직무분리기준)

## 제 11 장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제 83 조(준수여부 점검)

제 84 조(매뉴얼의 작성·관리)

제 85 조(일상감시)

제 86 조(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제 87 조(임직원 교육)

제 88 조(위반시 처리방법)

제 89 조(시정결과보고)

제 90 조(위반 임직원의 징계)

제 91 조(이의신청)

## 제 12 장 보 칙

제 92 조(자료의 기록·유지)

제 93 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제 94 조(민원 및 분쟁처리)

제 95 조(위임사항)

제 96 조(적용특례)

# 내부통제기준

제	정	2009.02.13
개	정	2010.11.05
개	정	2012.05.21
개	정	2014.12.01
개	정	2016.05.09
개	정	2017.08.31
개	정	2018.04.01
개	정	2021.05.20
개	정	2021.10.14
개	정	2021.10.20
개	정	2022.12.05
개	정	2023.03.10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 내지 제 30 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자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투자회사법’이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과 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세칙, 감독규정, 감독세칙 등을 포함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5 조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회사관련법규”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포함한다.) 등과 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세칙, 감독규정, 감독세칙 등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1-2. “관련법규”이라 함은 투자회사관련법규 및 금융관련법규를 말한다.
2. “내부통제”라 함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무보고의 신뢰성 유지, 제반 법규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와 그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제도 및 절차를 말한다.
3.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은 내부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와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관련법규, 회사의 내부규정 및 지침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규범 및 절차를 말한다.
4. “필요성에 의한 제공”(Need to Know Rule)이라 함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국내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회사에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한 회사를 말한다.
6. "고유정보"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투자자와 관련된 정보, 투자대상회사에 관련된 정보, 운용에 관한 정보 및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로서 회사 외부로부터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를 말하며, 일반에게 비공개되는 조사자료 또는 기록이나 회의자료 및 기밀보장이 필요한 계약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일반대중이 합법적이 경로를 통해서 취득가능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7. “관계회사 등” 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4 조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말한다.
8. “기준가격의 공고”라 함은 확정된 기준가격을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대외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매체 등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영업준비를 위하여 판매회사의 영업개시 시간 이전에 판매회사에 통지한 기준가격은 판매회사의 영업개시 시간부터 확정된 것으로 본다.
9. “내부통제체제”라 함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체제를 말한다

10. “정보차단벽”이라 함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및 시스템을 말한다.
11. “유가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 4 조 및 제 5 조에서 정한 증권을 의미한다. 다만, 투자회사와 관련된 유가증권은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1 항의 증권, 동법 제 5 조 제 2 항의 장내파생상품, 투자회사법 제 2 조 제 3 호에서 정한 “부동산관련 증권”만을 의미한다.

### 제 3 조(적용범위)

- ① 이 기준은 회사와 그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 6 장 자산관리업에 관한 기준은 투자회사 등 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임직원에게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 7 장 집합투자업에 관한 기준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임직원에게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②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회사의 내부(정관을 제외한다) 지침은 이 기준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④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를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4 조(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

- ①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 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 내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4. 매년 1 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④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이하 ‘감사’라 한다) 및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부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 사실을 인지하였을시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 장 준법감시인

### 제 5 조(자격요건)

①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0 조 제 2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46 조 각 호 및 지배구조법 제 26 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제 6 조(임면절차)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사임

3. 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46 조 또는 지배구조법 제 26 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내부에서 정한 정직 이상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 준법감시인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회사는 내부통제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준법감시인이 해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이사회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해임시 해임사유 포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임기 및 지위)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하되 그 임기는 3 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8 조(권한과 의무)

①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모든 업무에 접근하여 자료 및 정보를 열람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3.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개선 요구
4. 대표이사 또는 감사에게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견 표명
5.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기타 주요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및 발언권
6.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에 대한 중요사항의 직접보고
7.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8.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직원은 제 1 항제 1 호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자료 및 정보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

④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9 조(직무)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입안
2.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보고
3. 주요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 검토
4.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 사전검토 및 정정 요구
5.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의 작성, 배포
6.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7.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유지 및 보고
8.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 개정 및 운영
9.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10. 자금세탁 혐의거래 등의 보고

## 11. 기타 제 1 호 내지 제 10 호에 부수되는 업무

### 제 10 조(독립성 확보 및 겸직금지)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투자회사법 제4조, 제21조, 제22조의 3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투자회사법 제 22 조의 3 제 3 항 및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의한 겸영업무
  4. 위험관리 업무(다만, 회사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 11 조(준법감시조직의 설치)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준법감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전담 조직의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④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 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 제 12 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 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다만,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한다.
4. 정관, 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 1 호부터 제 7 호에 부수되는 업무

### 제 12 조의 1(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 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은 제 3 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제 3 장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 제 13 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 ① 회사는 업무의 성격, 절차, 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구조를 설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
  2.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할 것
  3.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고 승인절차를 마련할 것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업무는 동일한 부서 내 또는 동일한 임직원(등기임원 제외)에 의하여 겸무되지 않을 것. 다만, 다목, 마목 및 바목의 업무는 대표이사에 한하여 겸직할 수 있다.

- 가. 운용업무와 회계업무
- 나. 마케팅업무와 회계업무
- 다. 고유재산(자산) 운용업무와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 라. 마케팅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 마.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
- 바. 투자회사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 ② 회사는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③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제 3 항의 내부규정에는 조직간 업무분장에 관하여 중복 또는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조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 14 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 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 2. 투자자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 3.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 4. 부동산 및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② 소관부서는 제 1 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내용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장 정보의 효율적 전달체제

#### 제 15 조(정보의 효율적 전달체제)

- ① 회사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련 임직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정보전달체계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철저한 보안과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모든 대외 접수, 송달문서는 접수 또는 발송기록부에 기재하고 중요문서는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중요문서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거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차원에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문서를 의미하며, 일상적으로 반복되거나 계약의 단순 이행에 불과한 업무 등은 제외한다. 다만 중요문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법감시인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경유여부를 정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가 필요한 중요한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16 조(관련회사 등과의 협조)**

- ① 회사는 이 기준을 회사와 관련된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등에 통지하여 회사가 선관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이 기준에서 금지하거나 선관의무를 해치는 어떠한 사항도 제 1 항의 회사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사무관리의 원칙)**

- ① 모든 사무는 문서로 정확·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서를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문서로 작성 처리한다.
  -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문서가 아닌 전화, 구술 등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 2.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 3.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가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 18 조(적절한 문서관리)**

- ① 회사는 비밀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문서의 작성 및 처리, 분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자 등 거래당사자들과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할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허위로 문서 또는 기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 또는 기록을 위조

- 변조하는 행위
- 2.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초래하기 쉬운 내용의 문서 또는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
- 3.회사가 기밀로 정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에 필요한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 4.회사가 기밀로 정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회사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5.회사가 기밀로 정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책상 위에 방치한 채 자리를 비우는 등 회사기준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행위
- 6.문서의 보존연한을 정하지 않아 존재하고 있던 문서를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 서둘러 폐기하는 행위
- 7.문서의 보존연한을 정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기한 내 무단으로 폐기하는 행위 등

## 제 5 장 행동규범

### 제 1 절 윤리강령 (Code of Ethics)

#### 제 19 조(법규 준수)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회사의 내부규정 및 기타 업무처리기준 등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규위반 사실에 대해 면책되지 아니한다.
- ② 법규의 준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담당부서 또는 준법감시인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입사시 및 연 1 회 이상 회사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법규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임직원이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인사 등에 따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 20 조(보고의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급자와 준법감시인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나 감독기관이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 또는 협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자신이나 회사 내 다른 임직원이 관련법규 또는 회사의 규정을 어겼거나 어졌다고 의심되어지는 경우
2. 임직원의 지위나 역할로 인하여 투자자나 회사의 사업상 관계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3. 회사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부 관료에 대하여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제의하는 경우
4. 투자자의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
5. 임직원과 투자자 또는 회사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회사 임직원의 체포, 기소, 유죄의 판결 또는 정부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혹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 정부의 청문회나 소송에 자신이 포함되거나 회사 내 다른 임직원이 관계된 것을 알게 된 경우
8. 감독기관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제 21 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①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거나 제 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사와 임직원은 이 기준의 정함이 불분명하여 달리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제 22 조(기본윤리 및 직무태도)

- ① 임직원은 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회사 및 회사동료 등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하여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정도 영업을 실천하여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증식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투자회사 및 투자자의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퇴사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직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숙련된 업무처리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주어진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23 조(투자자이익 우선)**

- ① 투자자의 이익은 회사,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한다.
- ② 투자자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③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제 24 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 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6 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1 호부터 제 3 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 제 27 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 관리되어야 한다.

### 제 28 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자신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외부의 자를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승인을 하기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의 인적사항
  - 나)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인적사항(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포함)
  - 다) 제공의 필요성 및 사유
  - 라) 제공되는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승인을 얻어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9 조(차별금지 및 성희롱 방지)

- ① 회사는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지위나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0 조(정부 또는 감독기관이나 언론기관과의 접촉)

①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상 서류, 전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정부 또는 감독기관과 연락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에 의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 또는 단순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함에 있어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사전 협의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에 의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 또는 단순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에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에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정보제공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에 비추어 전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제 2 절 행위준칙 (Code of Conducts)

### 제 31 조(이해상충의 관리)

- ① 회사는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 1 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이해상충관리와 정보교류차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32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련법규, 집합투자규약 및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등을 위반하여 투자회사의 자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고유재산(자산)을 운용하는 행위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이호를 적용함에 있어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다고 본다)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관련법규,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또는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등을 위반하여 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 또는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9.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0.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1. 판매회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회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2. 자본시장법 제 55 조, 제 81 조, 제 84 조 및 제 85 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과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13.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4. 관계인수인, 관계중개회사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 하게 하는 행위
15.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16.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부동산운용 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17.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타회사의 임직원, 투자대상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관계인과 담합 등에 의하여 투자하는 행위
  18. 특정 투자회사 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거래, 자산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행위
  19. 정관, 약관,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확정수익율을 제시, 홍보하는 행위
  20. 루머에 근거하여 거래하거나 루머에 근거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 ② 회사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의 적절한 처리절차를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33 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

- ①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4 조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드시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4 조제 3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중개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보관, 매매는 모두 신고된 계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5. 준법감시인이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투자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이익은 회사의 주주, 임직원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할 것
  2. 투자자, 회사, 주주와 임직원의 사이에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이해상충이 유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것
  3. 개인투자행위를 함에 있어 임직원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③ 개인투자행위 중 특히 강조되는 금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고유정보나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2. 업무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비밀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 (Front Running :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거래에 앞선 고의적인 동일 거래)
  4.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나 투자자에게 매매를 권유할 의도를 갖고서 해당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5.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나 투자자가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특정 종목의 지분증권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6.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의 매매를 이용하여 자기계좌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7.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에 대한 보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적인 거래행위
- ④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임직원의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4 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편익제공 등)**

- ① 회사는 투자회사의 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는 편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경우 그 목적, 내용, 일시, 상대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35 조 (상품개발)**

- ① 새로운 상품을 기획, 개발하는 경우 상품개발담당자 및 운용담당자는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신상품의 구조, 내용 및 위험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설명하고, 감독기관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또는 보고)을 신청하기 전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 신청서, 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신상품과 관련된 법규준수위험과 업무영위위험 등 위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심의, 의결 조직체인 상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제 36 조(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의 작성)

임직원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작성시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요소에 관해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제 37 조(투자광고 방법 절차)

-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련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 제 38 조(조사분석보고서)

- ① 이 조에서 "조사분석보고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을 말한다.
  1. 특정 부동산유형이나 지역에 대해 회사내부의 조사담당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자료
  2. 특정종목의 유가증권 및 그 종목이 속한 산업동향에 대하여 회사내부의 조사담당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자료
  3. 어떠한 명목이든지 회사의 이름으로 회사의 내부, 외부에 공개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어지는 모든 해당 자료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조사 분석보고서 작성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표된 정보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자료의 인용처는 명확히 공개한다.
  3. 객관적인 사실과 개인의 주관적인 사실을 구별하여야 한다.
- ③ 조사분석보고서에 예측이 들어 간 경우 그 예측은 독자의 투자판단에 대한 근거로서가 아닌 단지 참고자료로서 만들어졌으며, 투자희망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예측을 근거로 취한 행위 또는 행위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면책 문언을 삽입하여야 한다.

## 제3절 정보차단벽



**제39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집합투자·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운용 관련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금융투자업의 종류(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겸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1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① 회사는 제4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게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 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8조는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 준용한다.

**제43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 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4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5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4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 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3조제1항, 제4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제47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 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49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45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제46조 및 제47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1조(복합점포 설치·운영)** ①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2. 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39조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5조(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무단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56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40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48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49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제 6 장 자산관리업

### 제 57 조(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①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기본적인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투자운용본부
  2. 투자개발본부
- ② 투자운용 각 본부에는 각 본부별 투자운용팀, 투자개발팀 및 자산관리팀을 두어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경영지원부서와 협의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투자운용팀
    - 가)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신규 상품 마케팅 및 분석 업무
    - 나) 투자자 유치 및 투자자 등 고객 관리에 관한 업무
    - 다) 투자회사 자산의 운용을 위한 상품마케팅
    - 라) 투자회사 설립 시 상품별 차입금 조달에 관한 업무
    - 마) 제위원회에 관한 업무
    - 바) 신규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계약, 위탁기관 선정 등 업무
    - 사) 신규설립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운용에 관한 업무
    - 아) 신규설립에 부수되는 기타 업무 등
  2. 투자개발팀
    - 가) PFV, 개발리츠 등 관계회사 설립을 위한 부동산개발 상품기획 및 사업성분석
    - 나) 개발사업 투자자 유치 및 투자수익성 확보 방안 수립
    - 다) 건축설계, 인허가, 시공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진행 및 관리
    - 라) 개발사업 관련 법률, 회계, 세무 등 자문업체, 자금보관사, PM 사 등
    - 마) 분야별 용역업체의 선정 및 관리
    - 바) 투자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사업 매각 및 정산, 청산 업무 등
  3. 자산관리팀
    - 가) 임대업무 관리 및 임차인 신용위험 관리 업무
    - 나) 부동산 매각 및 처분에 관한 업무
    - 다) 시설관리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
    - 라) 일반사무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업무 총괄
    - 마) 임대관리 및 시설관리에 대한 외부 위임에 관한 업무



- 바) 투자회사 주주와 관련한 업무
- 사) 투자회사 자금의 운용 및 자산의 기획에 관한 업무
- 아) 투자회사 자산의 예산수립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 자) 자산배분전략 및 투자전략에 관한 업무
- 차) 자금조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카) 투자회사 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계약체결 및 부대업무 등
- 타) 팀 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분석업무
- 파) 시장분석, 경제 환경 및 경쟁사 분석 등 업무
- 하) 신규 상품 기획, 설립 등 지원 업무

### 제 58 조(수탁자산 투자·운용지침)

- ① 회사는 수탁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서 수탁자산간 또는 수탁자산과 고유자산을 분리 관리하여야 하며, 구분계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각 투자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정관·자산운용준칙 및 회사와 투자회사간의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위탁 받은 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거나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에 대하여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특정수탁자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수탁자산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
  5.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6. 통상의 거래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7.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 부동산거래질서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
  8.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여 부동산거래질서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④ 회사는 투자회사의 수탁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59 조(회사 고유재산의 거래제한)

- ① 회사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회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투자·운용의 수탁을 받은 투자회사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거래를 할 수 없다.
- ② 고유재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규정 및 고유재산위험관리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삭제)

### 제 60 조(투자회사간의 거래)

- ① 회사가 투자·운용하는 투자회사 간에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당해 투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거래일 것
  - 2.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상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제 7 장 집합투자업

### 제 61 조(매입·환매 청구의 정정)

- ① 회사가 판매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수익자간 또는 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제 1 항의 정정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 62 조(운용과 매매의 분리)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63 조(사전자산배분 등)

-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 80 조에 따라 사전자산배분 기준(공모주식 등 장외거래 증권에 대한 배분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체결된 자산은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③ 지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매매가 체결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별 운용지시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특정 투자자 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의 거래 또는 배분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나 임직원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 및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에 이러한 거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주식의 온라인거래 주문시에는 주문시각과 주문내역이 함께 인쇄되어야 한다.
- ⑥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4 조(거래가격의 적용)**

- ① 유사집합투자기구에 할당되는 동일종목 자산(사전운용지시에 의하여 같은 시점에 운용 지시된 동일종목 자산)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분이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를 달리하거나 집합투자기구별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운용부서가 자산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장가격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기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 65 조(기준가격의 산정절차의 적정성 확보)**

- ① 회사는 기준가격 산정절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1. 기준가격 산출에 필요한 입력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2. 입력된 자료에 따라 산출된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② 제 1 항은 회사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66 조(기준가격 등 오류수정원칙)**

- ①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회사가 그 고유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 1.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합의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오류수정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하여 오류수정기준, 절차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 67 조(기준가격 등 오류발생 보고)

①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사실을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오류의 발생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류 시정방법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오류발생의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오류발생 일자 및 시간
2. 최초 발견자 및 발견 경위
3. 오류의 유형 및 내용(발생경위 포함)
4.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
5. 정정 후 결과 및 제반 변동사항
6. 각 변동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7. 신탁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8. 기타 오류수정에 따른 중요사항

### 제 68 조(기준가격 등 오류의 수정)

①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자산구성에 영향을 주는 오류 수정은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관련법규나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중개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 69 조(기준가격 등 오류발생 및 수정결과의 대외 통지)

① 소관부서장은 공고된 기준가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신탁업자, 기타 관련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당해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공고된 기준가격을 수정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재공고 하여야 한다.

#### 제 70 조(오류발생 관련 자료 등의 기록 유지)

①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기준가격이 공고되기 이전에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하자발생 원인 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제 2 항의 기준가격 재작업 사유 및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1 조(재발방지대책 수립)

준법감시인은 유사한 오류 또는 기준가격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 72 조(중개회사 선정기준)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73 조(의결권 행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 74 조(집합투자기구 관련 공시)

① 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제 8 장 자금세탁 방지

### 제 75 조(자금세탁 방지)

① 임직원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자금을 수탁하지 아니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와 같은 주의를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금세탁행위등에서 발생한 자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보이기 위한 자금세탁행위등에 회사가 이용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할 때에 자금의 원천 및 투자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자금세탁행위등에 의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수탁하거나 자금세탁행위등을 하는 투자자를 유치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 준법감시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함에 있어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함에 있어 차명 및 가명계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사는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금세탁 행위등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한다.
- ⑧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등 자금세탁행위등의 보고절차 및 방지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⑨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 등에 5 년 이상 보존(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자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관련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 9 장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보호

### 제 76 조(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 77 조(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운영)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1 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 사내이사
2.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 5. 준법감시인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의 제·개정 총괄
2. 고객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관련 민원 등의 이행 상황 감독
3. 고객 피해 구제 및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4. 관련 부서 모니터링
5. 고객의 동의철회 및 Do-Not-Call 에 대한 성실한 이행여부 감독
6. 내부직원 교육 및 훈련 등

## 제 78 조(내부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고객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고객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고객 신용정보의 유출·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 79 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회사는 개인정보 이용자의 식별 및 인증,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제어, 개인정보 누출·파손방지 대책,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황 기록,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분석 및 감사)등 기술적·물리적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제 10 장 금융사고 예방



### 제 80 조(금융사고 예방)

- ①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모든 금전 출납은 각종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법인 인감 및 인장은 담당부서장의 승인여부와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도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③ 금전출납 담당자의 부재 시에는 법인인감, 인장, 통장 등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금전출납 담당자는 금전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각종 증명서나 첨부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⑤ 일상적인 경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 여부 및 각종 결재시 거래증빙과 상호대조 이행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⑥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81 조(명령휴가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회사는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82 조(직무분리기준)

회사는 자금의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제 11 장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 제 83 조(준수여부 점검)

- ①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하여 법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방법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1.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점검
2.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3. 준법감시인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신고서나 보고서 또는 점검표 등의 검토 및 확인
4. 내부제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제 84 조(매뉴얼의 작성·관리)

- ①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해 매뉴얼을 작성, 활용한다.
- ② 제 1 항의 매뉴얼에는 중점 점검대상 법규 및 체크리스트, 점검 보고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법규 및 내부규정이 제·개정되거나 업무방법이 변경·개선되는 경우 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 ③ 제 2 항의 체크리스트는 모든 임직원이 효율적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그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수행주기, 주요 점검항목, 관련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 85 조(일상감시)

- ① 일상감시를 위한 사전검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2. 이사회(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각종 중요 위원회의 부의사항
  3. 새로운 업무 및 상품의 개발과 추진
  4. 임직원 또는 대주주와의 내부거래
  5. 투자회사의 정관, 자산관리계약서, 자산보관계약서 등 관련 서류
  6.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등 집합투자기구 관련서류
  7. 각종 경영공시 사항
  8.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
  9. 기준가격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② 대표이사는 일상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86 조(내부고발제도의 운영)

- ① 회사는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② 내부고발 제도는 임직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고발자는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을 목적으로 내부고발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 우수자나 이 기준 준수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 제 87 조(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상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내용 및 규제취지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88 조(위반시 처리방법)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이 기준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또는 준법감시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팀)의 자체조사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제 1 항에 의한 보고시 제재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아니 하도록 내부통제의 취약부분을 점검, 개선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벌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89 조(시정결과보고)

감사(준법감시인을 둔 경우 준법감시인)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1 월 이내에 해당 위반자(또는 위반부서(팀))는 시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준법감시인을 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90 조(위반 임직원의 징계)

감사(준법감시인을 둔 경우 준법감시인)는 사안에 따라 위반 빈도수, 위반 내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조정이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2. 지시, 은폐 등에 관여한 자
3. 다른 사람의 위반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자

4. 기타 이 기준의 운영을 방해한 자.

### 제 91 조(이의신청)

- ① 임직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준법감시인을 둔 경우 준법감시인)의 조치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조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이의제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 "업계의 관행 또는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위법행위
  - 2. "불필요한 규정 또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한 위법행위
  - 3. "실현 가능한 이익이 그에 대한 벌금보다는 큼"을 이유로 한 위법행위
  - 4.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한 위법행위

## 제 12장 보칙

### 제 92 조(자료의 기록·유지)

-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한 자료 및 관련법규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 서류 등을 일정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 93 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 ① 내부통제기준은 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조직 체계의 변경, 그 밖에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③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 제 94 조(민원 및 분쟁처리)

- ① 회사는 투자자의 고충,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대하여 민원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접수와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모든 민원 및 분쟁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민원 및 분쟁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고양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95 조(위임사항)

①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으로써 준법감시인의 직무나 준법감시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 제 96 조(적용특례)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 방지 및 사후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감사의 직무범위와 중복되거나 준법감시인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와 협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 년 2 월 13 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0 년 11 월 5 일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 년 5 월 21 일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 년 12 월 1 일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 년 5 월 9 일 변경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 년 4 월 1 일 변경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 년 5 월 20 일 변경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 년 10 월 14 일 변경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 년 10 월 20 일 변경 시행한다.